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마복은 제외한다) 단지에 설치하는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 법 제57조의3제1항에서 “단지내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제47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단지내교통안전시설) ①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2. 과속방지턱
3. 시선유도봉
4. 도로반사경
5.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 표지

6. 조명시설

7.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8.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9. 교통정온화 시설

10. 그 밖에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라 단지의 규모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의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5(중대한 사고) 법 제57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4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에서 “2. 개별기준”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1.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1호	200만원		
2.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교	법 제65조제	300만원		

통수단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항제2호			
3.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3호	300만원		
4.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2호	600만원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4호	100만원		
6.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교통시설안전진단업무를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5호	100만원		
7.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6호	300만원		
8.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점검·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7호	300만원		
9.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8호	100만원		
10.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9호	100만원		
11. 법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9호의2	500만원		
12. 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9호의3	50만원		
1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14. 법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10호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15. 법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법 제65조제1항제3호의2	100만원		

조작한 경우				
15의2.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4호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16. 법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11호	50만원		
17. 법 제5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 방법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5조제2항제12호	<u>100만원</u>	<u>300만원</u>	<u>500만원</u>
18. 법 제5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법 제65조제2항제13호	<u>100만원</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2. 개별기준 중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되거나 다시 설치되는 단지내도로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u>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마</u> <u>목은 제외한다) 단지에 설치하는 차</u> <u>도, 보도, 자전거도로를 말한다.</u>
<u><신 설></u>	제47조의3(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 법 <u>제57조의3제1항에서 “단지내도로를</u> <u>설치·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u> <u>치·관리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u> <u>의 자를 말한다.</u>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8호 <u>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u>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 <u>에 따른 관리주체</u>
<u><신 설></u>	제47조의4(단지내교통안전시설) ①법 <u>제5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안전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u> <u>의 시설물을 말한다.</u> 1.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 <u>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u> 2. 과속방지턱 3. 시선유도봉

	4. <u>도로반사경</u> 5. <u>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 표지</u> 6. <u>조명시설</u> 7. <u>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u> 8. <u>보행자용 방호울타리</u> 9. <u>교통정온화 시설</u> 10. <u>그 밖에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u> ② <u>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라 단지의 규모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u> <u>제47조의5(중대한 사고) 법 제57조의3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u> 제48조(업무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실태 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u>
<u><신 설></u> 제48조(업무의 위탁) ① ~ ③ (생략) <u><신 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연 락 처	(044) 201 - 3814